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8-65호
2018. 8. 24.(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규 칙(2)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32호)1
-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33호)6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고시 제2018-118호)16

공 고(5)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655호)17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658호)18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659호)20
-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2010년 9차수)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631호)23
- 도시계획시설(매봉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완료 공고(공고 제2018-632호)24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629호)25

공									
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서미경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3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
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제11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준용)”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원 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소개년월일				
소개의견				

청원철회요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본 청원심사규칙은 별지 서식에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17조까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서미경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33호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 등(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매결연 체결”을 “자매결연 체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의 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계획”을 “공무국외출장계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행”을 “출장”으로, “여행자”를 “출장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여행국과 여행기관”을 “출장지와 출장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국외공무여행”을 “그 밖에 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 등을 할 때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중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있어”를 “국외출장 심사에”로, “다음의 각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2인”을 “2명”으로, “경우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국가·기관”을 “국가나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출장지의 사정, 관습, 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제5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여행”을 “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출장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위원회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출 장 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성명포함)

※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의 기대효과

[별지 제2호서식]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사·의결한다.

심의결과 : 가결·부결

직 위	성 명	심 의 결 과		서명(날인)
		가결	부결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붙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1부

20 . . .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장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0 . .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 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무국외여행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표기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정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 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제12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오정동 223-223	한남로17번길 59	2018 8 24	건물신축	한남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석봉동 203-1	대덕대로1593번길 48-6	2018 8 24	건물신축	대덕대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5,9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제7항(영업허가 등)의 규정에 의거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2018. 09. 07.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폐업 일자
일반 음식점	블루	대덕구 송촌북로12번길 15 (송촌동)	권수현	2018.08.16.폐업

3. 처분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제37조 제7항
4. 직권말소처분 사항 공시송달 내역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5. 공고기간: 2018. 08. 24. ~ 2018. 09. 06.
6. 고지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2018년 09월 06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청소위생과 위생안전담당 ☎(042)608-6901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8-43호	도시가스관 매설	계	CNCITY 에너지	도시가스		1.0	1.2
		오정동 468-23번지 앞			아스팔트	1.0	1.2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위치도 및 현장사진



오정동 468-23번지 앞



2018. 08.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8 -44호	도시가스관 철거	계	CNCITY 에너지	도시가스		4.0	8.0
		오정동 255-16번지 앞			아스팔트	2.0	4.0
		오정동 277-27번지 앞				2.0	4.0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위치도 및 현장사진



오정동 277-27번지 앞



2018. 08.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2010년 9차수)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항암치료제초과수급)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74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공고기간: 2018.8.24.~2018.9.8.(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금액	비고
이○진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38번길 4* 20*호 (갈마동, 제*주택)	우편물이 반송함에 투함 됨.	1,505,670원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2010년 9차수)

5. 공시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체납)를 통보하오니 **2018. 9. 12.(수)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654-099192-17105 (대덕구청 의료기금(특)수입금출납원)
 -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 및 “지방세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대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담당(☎ 042-608-6385)

도시계획시설(매봉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완료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8-70(2018. 5. 4.)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매봉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완료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시행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3-2번지 / 매봉어린이공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정비)사업
 - 사업의 명칭 : 매봉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면적 : 1,511.1m²
 - 사업의 규모 : 공원 리모델링 1식 / 시설면적 843.6m², 녹지면적 667.5m²
4. 사업 시행자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 2018. 8. 7.
6. 준공(검사)일 : 2018. 8. 7.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8 - 65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생태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대해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라. 공정·생태관광 지원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예산 반영

다. 비용추계서: 별첨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8. 8. 24. ~ 2018. 9. 13.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9. 1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체육과(전화 : 042-608-6732, FAX : 042-608-3823, E-mail : mywish@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체육과 담당자 변창기 (전화 : 042-608-67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생태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의 파괴 없이 관광객과 지역공동체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이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생태 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생태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생태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 참여형 공정·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생태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정·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덕구의원

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생태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4. 공정·생태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주민

5. 그 밖에 공정·생태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생태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생태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생태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나.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4조(지원사업)
및 제15조(재정지원)

3. 비용추계 전제 : 계속사업(매년시행)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총비용(a-b)							
세입	소계(a)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기타(구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출	소계(b)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따라 비용 변동 가능

5.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 세입 : 지방세(자체수입)
- 세출 : 공정·생태관광 공모사업 등 지원 100백만원, 공정·생태관광 홍보 및 기타 50백만원, 생태학교 운영 50백만원

6. 재원조달 방안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의존 재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소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나.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세 자체수입 / 구비 100%

7. 부대의견 : 없음

8. 협의사항 :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

9. 작 성 자 : 문화체육과장 행정5급 이재근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과	
담 당 자 연 락 처	변 창 기 042-608-6732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2018.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